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1161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9. 11.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9. 11. 22. 접수 제498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보험계약자인 C이 피보험자인 (주)D과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인 C이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이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8. 12. 27.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23201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9. 4. 17. ‘C은 원고에게 20,098,63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2019. 6.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6. 18. 확정되었다.

나. C의 부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9. 11. 3. 사망하자 그 상속인으로서 자녀인 C, 배우자(妻)인 피고는 2019. 11. 3.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9. 11. 22. 접수 제4987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생활하고 있고 부부인 망인과 피고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가 상속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이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 것이고,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녀인 C이 자신의 자산상태를 피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당시 C에게 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C에게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소극재산을 반영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사상구

[도로명주소]부산 사상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 사상구 대 31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75.59㎡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3120분의 308. 끝.

